

[사 건 명] 행심 2018 - 54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학교에서의 봉사 6시간 등』 처분 취소 청구

□ 청구인 : ◇◇◇

□ 피청구인 : ○○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10. 05.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학교에서의 봉사 6시간 등』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1. 인정사실

- ① 피해학생은 2018. 9. 18. 같은 반 11명의 학생이 자신을 따돌림하고 있다고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고, 2018. 8.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의 단체대화방 내용을 제출하였다.
- ② 단체대화방 내용은 여러 학생들이 피해학생의 글을 힐난하거나 빈정거리는 것인데, 청구인은 많은 글을 남기지는 않았으나 여러 학생들과 동조하여 피해학생을 무시하는 듯한 글을 남겼다.
- ③ 피해학생에게 안검하수(눈꺼풀 처짐증)의 증상이 있는데, 같은 반 학생들은 이를 알지 못하고 피해학생이 평소 짜러본다고 생각하였고, 피해학생이 운동회 준비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단체생활을 잘 하지 못하므로 불만이 있었다. 그래서 같은 반 학생들은 피해학생을 따돌리고, 피해학생이 다른 학생과 다툼이 있을 때마다 그 일과 관련 없는 여러 학생이 몰려와 피해학생을 나무라거나 무시하는 행동을 하였다.

④ 피해학생은 담임교사에게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하였고, 담임교사는 피해학생과 같듯이 있던 학생들을 수차례 지도하고, 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하기도 하였으나, 관련 학생들은 담임교사가 피해학생의 편만 들어주고 자신들을 질책한다면서 반발하였다.

⑤ 피청구인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18. 10. 5. 피해학생을 괴롭힌 11명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는데, 가담의 정도가 중한 3명의 학생에게는 사회봉사 10시간 외 부가처분 등을, 청구인을 포함한 8명의 학생에게는 학교에서의 봉사 6시간 외 부가처분 등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① 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은 교실에서 또는 단체대화방을 비롯한 사이버 공간에서, 어떤 형태로든 피해학생을 공격한 일이 없고, 피해학생에 대한 개인정보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않았다. 청구인이 가해학생으로 조치를 받은 것은 피해학생의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한 것이다.

나. 단체대화방에 글을 올린 11명을 모두 가해학생으로 보고 처분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단체대화방에 게시한 글의 내용을 검토하지 않고 처해진 처분으로서 타당하지 않다.

다. 피해학생이 안과질환이 있어서 타인을 쬐려보는 인상을 주어 다른 학생들에게 오해를 주었는데,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들 대부분은 이를 알지 못하였다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고 나서 알게 되었다. 따라서 학교 선생님과 피해학생 학부모가 이 사실을 알리고 양해를 구했다면 가해학생들의 행동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 청구인은 단체대화방의 참여가 소극적이고 댓글도 많이 달지 않았으므로 주도적이라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도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한 것을 전달하거나 단순히 자신의 의견이 옳음을 밝히고자 노력한 것일 뿐 의도적으로 피해학

생의 인격을 모독하는 글이라고 볼 수 없다.

② 판단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의 2에는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단체대화방에서 다른 학생들과 동조하여 피해학생을 비난하거나 무시하고 빈정거리는 듯한 글을 게시하는 것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따돌림’에 해당한다.

다. 피해학생이 신체적인 약점을 다른 학생들에게 알리지 않음으로써 오해를 불러일으켰거나, 피해학생이 단체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고 하여, 청구인 및 가해학생들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

라.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단체대화방에 게시한 글의 내용 및 횟수, ‘따돌림’에 가담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조치를 하였는바, 조치의 정도가 상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